

##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36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9년 7월 일  
제출자 : 제천시장

### 1. 제안이유

장애인들을 생산적 경제활동에 참여시켜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 작업장의 위치 규정 (안 제2조)
- 나. 장애인 작업장의 사업내용 (안 제3조)
  - 작업장운영, 상담 및 취업활동
- 다.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4조)
  - 수탁자격 :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장애인 관련단체
  - 위탁기간 : 3년
  - 운영규정 제정
- 라. 위탁시 수탁자에 운영비 보조 및 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)
- 마. 작업장 고용은 제천시 거주 장애인으로 하되 10분의 2 범위내에서 비장애인을 고용토록 함 (안제6조)
- 바. 수탁자의 사전 시장 승인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  -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, 작업장 운영, 수익금 사용등
- 사.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함 (안 제8조)
  - 수익금의 작업장운영과 장애자 복지에 사용
  - 작업장의 타인임대, 용도변경 금지
  -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 신증축시 시장승인 및 기부채납 의무

- 아. 시장의 작업장에 대한 조사, 검사권등 감독권을 규정함 (안 제9조)
- 자. 위탁 취소 사유를 규정함 (제 10조)
  - 수탁의무 위반, 시장의 감독이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,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

3. 의안전문 : 불임

4. 관계법령 : 불임

첨 부 1. 의안전문 1부.

2. 관련법령 1부.

3.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.

##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 및 명칭) ① 명칭은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(이하 “작업장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  
 ② 작업장의 위치는 고암공단길 20 (고암동 145-13번지)에 둔다.

제3조(사업내용) 작업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
2. 장애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활동
3.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

제4조(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,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허가한 장애인 관련 단체 등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「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며,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
- ③ 수탁자는 운영요원, 고용장애인의 급여기준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운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) ①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승인)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작업장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제4조 제3항에 따른 규정의 재정과 개정, 폐지에 관한 사항
3. 제7조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

제7조(수익금의 사용)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근로장애인 급여 및 운영 유지비에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보호작업장운영유지비에 사용한다 (단, 근로장애인 및 직원급여 부족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)

제8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작업장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

③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 및 개축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.

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9조 (감독) ① 시장은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,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에게 필요 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탁의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2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
3.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
제11조(근로대상 장애인) 작업장 근로대상 장애인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한다. 다만,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근로 인원의 10분의 2 범위 안에서 생산 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할 수 있다.

제12조(회계및결산)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
 ② 매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보조금 및 사업내역을 결산하고 집행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, 「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

### 장애인복지법

[시행 2008.2.29] [법률 제8852호, 2008.2.29, 타법개정]

제58조 (장애인복지시설)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장애인 생활시설 :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·치료·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
2.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: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·치료·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·의료재활시설·체육시설·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
3.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: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
4.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: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·상담·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>

제59조 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 <개정 2008.2.29>

③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「의료법」에 따른다.

④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·신고·변경신고 및 입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>

##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

[시행 2009.1.1] [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, 2008.12.31. 타법개정]

**제41조 (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)** 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,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[별표 4]

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(제41조 관련)

구 분	시설의 종류 및 기능
1. 장애인 생활시설	<p>가. 장애유형별 생활시설: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·교육·직업·심리·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</p> <p>나. 중증장애인 요양시설: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·치료 또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</p> <p>다. 장애영유아 생활시설: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·교육·심리·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</p>
2.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	<p>가. 장애인복지관: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·교육·직업·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</p> <p>나. 장애인 의료재활시설: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, 진단·판정,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</p> <p>다. 장애인 주간보호시설: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</p> <p>라. 장애인 단기보호시설: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</p> <p>마. 장애인 공동생활가정: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</p>

	<p>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</p> <p>바. 장애인 체육시설: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</p> <p>사. 장애인 수련시설: 장애인의 문화·취미·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·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</p> <p>아. 장애인 심부름센터: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</p> <p>자. 수화통역센터: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·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</p> <p>차. 접자도서관: 시각장애인에게 접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</p> <p>카. 접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: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</p>
3. 장애인 직업재활시설	<p>가. 장애인 보호작업장: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 용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,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,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,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</p> <p>나. 장애인 근로사업장: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 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,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,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</p>
4. 장애인 유료복지시설	장애인 생활시설로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, 상담, 훈련 등 편의를 제공하고 모든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
5.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	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,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·용역에 관한 상담, 홍보, 판로 개척 및 정보 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

[별표 5]

IV.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·운영기준

1. 시설의 입지조건 지역별 적정한 분포와 장애인 수, 보건·위생·급수·안전·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나 건물을 선정하여야 한다.

2. 시설에서 근로를 하는 장애인(이하 “근로장애인”이라 한다)의 수

가. 장애인 보호작업장

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의 최소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하고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도 근로장애인이 최소 10명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# 지방자치법

[시행 2009.4.1] [법률 제9577호, 2009.4.1, 일부개정]

**제9조 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**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부녀(婦女)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·운영

바.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납골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
**제22조 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- 제104조 (사무의 위임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[시행 2009.5.6] [대통령령 제21473호, 2009.5.6, 타법개정]

- 제11조 (민간위탁의 기준)** ①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

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,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12조 (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)**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적인 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(이하 "민간수탁기관"이라 한다)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 <신설 1999.12.31>

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,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, 처리기준의 불공정,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천시 공고 제 2009 - 763

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
2009. 5. 29

제 천 시 장

###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조례명 :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2. 제정이유

장애인들을 생산적 경제활동에 참여시켜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 작업장의 위치 규정 (안 제2조)
- 나. 장애인 작업장의 사업내용 (안 제3조)
  - 작업장운영, 상담 및 취업활동
- 다.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4조)
  - 수탁자격 :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장애인 관련단체
  - 위탁기간 : 3년
  - 운영규정 제정
- 라. 위탁시 수탁자에 운영비 보조 및 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)
- 마. 작업장 고용은 제천시 거주 장애인으로 하되 10분의 2

범위내에서 비장애인을 고용토록 함 (안제6조)

바. 수탁자의 사전 시장 승인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- 작업장 운용계획 및 변경, 작업장 운영, 수익금사용등

사.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함 (안 제8조)

- 수익금의 작업장운영과 장애자 복지에 사용

- 작업장의 타인임대, 용도변경 금지

-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 신증축시 시장승인 및 기부채납 의무

아. 시장의 작업장에 대한 조사,검사권등 감독권을 규정함 (안제9조)

자. 위탁 취소 사유를 규정함 (제 10조)

- 수탁의무 위반,시장의 감독이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,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

#### 4. 의견서 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09년 6월 18일 까지 제천시장 (참조 사회복지과 재활복지팀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연락처 641 - 5720, FAX 641 - 5689 담당자 : 오 선 탁

-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-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, 주소

- 기타 참고 사항 등

★재활복지팀 장	사회복지과장					
오선택	06/30 최남용					
지방사회복지주사		김영진				

## 조례제정(안) 입법예고결과보고서

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(안)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1. 입법예고 조례명 :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(안)
2. 공고번호 : 제천시공고 제2009-763호
3. 공고기간 : 2009. 05. 29. ~ 06. 18.(20일)
4. 공고매체 :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(입법예고)
5. 공고내용 : 별도붙임
6. 공고결과
  - 조회수 : 115 명
  - 의견제시자 : 없음

붙임 : 공고안 1부.(별지) 끝.